

●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210호

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(2616)

‘EVA시트 방수층 하부에 수팽창하는 아크릴레이트를 합지한 건식 비노출 방수공법’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4월 26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신기술개발자

신청인(1)	법인명(성명)	(주)홍신		
	주 소	우40117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개경포로 2118		
	전화번호	053-965-0103	팩스번호	053-965-3103
신청인(2)	법인명(성명)	(주)홍신이엔씨		
	주 소	우42039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랑로8길 6, 3층(만촌동)		
	전화번호	053-965-0103	팩스번호	053-965-3103
신청인(3)	법인명(성명)	대구교통공사		
	주 소	우42808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250		
	전화번호	053-640-2124	팩스번호	053-640-2189

2. 신기술의 개요

- 지정번호 : 제789호
- 명 칭 : EVA시트 방수층 하부에 수팽창하는 아크릴레이트를 합지한 건식 비노출 방수공법
- 기술분야 : 건축 > 방수 > 복합방수
- 신기술의 내용
이 신기술은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에틸렌아세트산 비닐 수지계(ethylene-vinyl acetate) 시트 방수층 하부에 수팽창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시트지 파손에 대한 자가 보수 특성을 지닌 아크릴레이트를 합지한 1℃이상, 내부포수 표면건조 상태에서 시공가능한 건식 비노출 방수공법이다.
- 신기술의 범위
재활용 EVA시트 방수층 하부에 수팽창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시트지 파손에 대한 자가 보수 특성을 지닌 아크릴레이트를 합지한 1℃이상, 내부포수 표면건조 상태에서 시공가능한 건식 비노출 방수공법

3.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

- 가. 보호기간 : 2016.05.11. ~ 2029.05.10.(13년)
- 나. 보호내용 :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
 -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
 -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,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
 -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

4. 기 타

-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(<http://www.kaia.re.kr>) 「지식/성과도서관/신기술·추천기술」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